

여러분을 환영합니다!!

전문연구요원

-신규 편입자 교육-

병무청

1.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?

1-1.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.

해당분야

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연구분야 또는

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



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

- 대학부설연구기관 : 해당학과 실험실에서 연구활동
- 대학부설연구기관 또는 우수집단인 연구기관 : 기업과 공동연구, 기술개발 계약 체결하여 연구활동
- 방산연구기관 : 부득이한 사유로 실험장, 사업장에서 연구
- 자연계대학원 : 다른지역 소재 해당학과 연구실 , 실험실에서 연구

1.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?

1-2.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

겸직금지 업무

- **민법·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·감사·상무 등 임원**
- 편입 당시의 제조·생산분야가 아닌 **사무관리, 영업**
- 근로시간 중 **개인 영리 활동**



겸직 가능업무

- **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 : 전직 후 연구과제 수행하면서 학위취득 논문 준비**
- **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 다른 업무 종사(대학이나 학원 강사)**

1.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?

1-2.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.



위반사례

임원업무 위반사례

▶ 전문연구요원이 소속법인의 이사로 임명되어 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의 권한인 결재 등의 업무 수행

→ 병역법 위반 : 편입취소

영리활동 위반사례

▶ 전문연구요원이 업체장의 묵인 하에 조기 퇴근하여 입시학원에서 8개월동안 강사로 개인 영리활동

→ 병역법 위반 : 편입취소

1.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?

1-3.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. (복무길라잡이 수첩 7페이지 참조)

편입당시 해당분야 미종사



편입취소 및 고발(3년이하의 징역)

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 위반한 경우

연장복무, 경고, 시정 등

1.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?

1-4.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**(복무길라잡이 수첩 8페이지)**

병역법 위반행위 신고

▶ **내용 : 편입당시 해당분야(업체) 미종사**

- 편입 당시 해당분야 업무가 아닐 경우
-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닐 경우



병역법 위반행위 신고시기 / 방법

▶ **시기 : 위반행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!!**

*** 30일 경과 후 신고 시 연장복무 등 불이익**

▶ 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, 관할지방청 전화 등

*** 반드시 본인이름으로 신고,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**

*** 업체의 위반행위 확인 시, 60일 이내 전직 신청 가능(신고자)**

1.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?

1-4. 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시 신고해야 합니다. **(복무길라잡이 수첩 9페이지)**

근로기준법 등 위반행위 신고

고용노동부

▶ **내용 :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위반**

- 근로계약서 미작성(미교부), 임금체불, 폭행·폭언 등

신고 방법



▶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국번없이 1350 또는

관할고용노동청으로 신고

*** 근로기준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,**
60일 이내 전직 신청 가능

2. 출장 · 파견은 갈 수 있나요?

2-1. 출장 · 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



가능 기간

- **파견(출장포함) :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**
- 국내 교육훈련 :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

승인 절차

- **3개월 이상**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 : 관할병무청 **승인**
- 3개월 미만 국내교육훈련 및 지정업체간 파견 : 신상변동통보
- 7일 이내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: 복무기록표 기재

*** 승인 및 신상변동통보 없이 파견(출장)시 연장복무 등 처분**

=> 출장·파견 전에 업체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·승인을 받았는지 확인

2. 출장 · 파견은 갈 수 있나요?

2-2.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가능 범위

- **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 출장**
-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
- 연구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.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

출장 제한

-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와 관련 없는 **영업소**
-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
-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 판촉사원 활동

2. 출장 · 파견은 갈 수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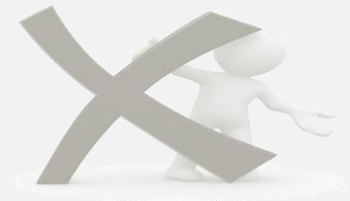
2-3.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가능 범위

-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간 파견
- 공동연구 위한 병역지정업체간 또는 동일법인이나 다른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등

파견 제한

-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파견
- 그 해 고발·경고·주의처분을 받았거나 인원배정이 제한된 업체로의 파견
-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
- 파견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



2. 출장 · 파견은 갈 수 있나요?

2-3. 출장 ·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



동일법인 내 파견 위반사례

▶ ㅇㅇ 소재의 병역지정업체에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업체에 5개월 동안 근무

→ 병역법 위반 : 5개월 연장복무

파견기간 위반 사례

▶ 병역지정업체 사장이 동일법인 내 비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소에 파견승인을 받아 근무시키다가 파견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시키지 않고 13개월동안 계속 근무시킴

→ 병역법 위반 : 13개월 연장복무

3.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?

3-1. 당연전직으로 업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.

당연전직



✓ **의무적으로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**

-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**폐업**하거나 **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**된 경우
-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**6개월 이상 휴업** 또는 **영업정지 처분**을 받은 경우

3.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?

병무청 승인 전 퇴사시
편입 취소!!

3-2. 승인전직으로 업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.

승인전직

✓ **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.** (절차:복무길라잡이 20페이지)

- 한 병역지정업체에서 **1년 6개월 이상 의무복무한 경우**
- **연구분야의 폐쇄·이전·축소** 등으로 **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경우**
- **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체불**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
- 업체장의 부당한 복무지시에 따라 **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신고하여 사실이 인정된 경우**
- 업체의 **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피해 입은 사람이 고용노동부 등 통보하여** 그 행위가 **위법·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**
- **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**
- **해고된 사람이 해고 소송등을 제기**하여 그 결과 **해고가 위법·부당함이 확정된 경우**

(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함)

- **폭행 등 유·무형력의 행사에 의한 피해로 업체에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 등**

3.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?

3-3.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.

대기기간

✓ **다른 업체로 옮기는 대기기간**



- 당연전직 사유 발생일 또는 전직 승인일로부터

3개월 (1년 6개월 복무 후 승인전직은 14일) 이내

***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 연장 (1년 6개월 복무 후 승인전직은 제외)**



3.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?

3-4.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전직 할 수 없는 경우

- **승인전직 대상자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 남은 사람**
  (단,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경우는 제외)

- **그 해 고발,경고,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인원배정이 제한된**

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

-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에 중단을 초래하는 경우

-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

- 편입 당시 연구계열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등



3.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?

3-4.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
승인전직 위반사례

▶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서 1년 6개월을 복무한 후

관할 지방병무청에 전직 승인 받지 않고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

→ 병역법 위반 : 편입취소

4. 휴가 · 병가를 갈 수 있나요?



4-1.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·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.

휴가(연가)

- **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일수(초과 시 연장복무)**
- 지각·조퇴·외출은 모두 합하여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

  * 지각·조퇴·외출은 개인별 복무상황부 기재 후 결재받아야 함

무단 결근



- **통틀어 8일 이상 무단 결근 시 편입취소 및 고발(3년이하의 징역)**

4. 휴가 · 병가를 갈 수 있나요?

4-1.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·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.



병 가

- **근로기준법 및 사규에 따라 실시하며,**
- **통틀어 30일 이내기간**은 복무기간 포함**(초과 시 연장복무)**

  * ’16.6.13.이전 편입자는 3개월

업무 상 병가(휴직)

- 업무 상 부상·질병 또는 장해로 인한 병가(휴직)기간은 의무복무기간 포함

  *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결정통지서의 요양기간

4. 휴가 · 병가를 갈 수 있나요?

4-2. 질병 등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가 어려울 때 "병역처분변경원"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병역처분변경원 신청

전문연구요원

- 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병무용 진단서를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제출

병역지정업체장

- 관련 서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

지방병무청장

-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
  - 1급~4급 : 역종, 복무기간 변동없음
  - 5급 : 편입취소, 전시근로역 처분
  - 6급 : 편입취소, 병역면제 처분

5.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?



5-1.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.

수학금지

- 교육기관에서 수학 불가
- 주간학과 학적보유자가 동일학과 야간과정 수학 금지

→ 위반 시 : 편입취소 또는 연장복무

수학 금지의 예외

- 야간(대학 등),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
- 3년6개월 범위 내 박사과정 수학(복무기간 미포함)
- 복무만료예정자가 휴가범위 내 복학

6.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?



6-1.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허가 대상 및 기간

- 업무(해당분야)와 관련된 국외연수, 출장
- 휴가기간 범위 내의 개인여행 등
- 허가기간 : 복무기간 동안 통틀어 1년 범위이내

* 의무복무기간 인정 : 통틀어 3개월

(해당분야와 관련된 공동연구, 기술연수, 기술지도는 1년 범위 내 모두 인정)

→ 허가없이 출국, 미귀국 시 : 편입취소

6.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?



6-1.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허가 신청 절차

- 관할지방병무청으로 신청
- 구비서류
  - 국외여행허가 신청서
  - 국외여행허가 추천서(병역지정업체의 장 추천)
  - 기타 증빙서류

6.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?

6-1.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

국외여행 허가기간 위반

▶ 전문연구요원이 기술연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3개월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기간보다 7일 늦게 입국

→ 병역법 위반 : 편입취소

7.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?



7-1.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4주간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.

군사교육소집 통지 및 기간

- 언제 ? 가급적 편입 후 6개월 이내에
- 얼마나? 4주간(의무복무기간에 포함)
- 어떻게? 관할병무청에서 입영일자 결정하여 통지

* 또는 본인이 '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'으로 신청

(병무청 홈페이지-병무민원포털)

→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: 편입취소 및 고발

7.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?

7-2.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군사교육소집 연기

- 언제 ? 질병, 주요업무 수행, 가사사정 등
- 어떻게? 업체를 통하여 관할병무청으로 신청

→ 의무복무기간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을 경우,
복무만료 처분을 보류

8.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

8-1. 의무복무기간은 **편입일부터** 포함됩니다.

의무복무기간 미포함 기간 = 연장복무 기간

-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기간
- 휴직 또는 정직 기간(업무상 부상·질병·장해로 인한 휴직 제외)
- 업체의 휴업·직장폐쇄·영업정지 기간(실제근무기간은 포함)
-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초과하는 병가기간
-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 기간
- 업체의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아 연장복무가 결정된 기간
- 전직대기기간이 3개월(또는 14일)을 초과하는 기간 등

9.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 되나요?



9-1. 편입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편입취소 사유

-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
- 편입당시 업체의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은 경우
- 통틀어 8일이상 무단결근한 경우
- 군사교육소집을 기피한 경우
- 전직대기기간 내 전직하지 않은 경우
-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경우
-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등

9.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 되나요?

9-2.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무하게 됩니다.

의무부과

▶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

복무기간 단축기간

▶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기간과

▶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

9.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 되나요?

9-2.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무하게 됩니다.

편입취소 복무단축 사례

▶ 현역병 전문연구요원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70일 복무 후 편입취소 된 경우

복무단축

- 복무기간 단축 : 89일

【군사교육소집기간 29일 + 의무복무기간 60일 (<270일-29일>/4일) 】

현역복무

- (21개월 - 89일) 복무

9.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 되나요?

9-3. 편입이 취소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. (편입취소 유보원 신청)

대 상

▶ 병역지정업체서 해고된 경우, 근로기준법에 의하여
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사람

절차 및 결과

▶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병무청으로 제출
*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 또는 소송제기 서류
- 적법,정당한 해고로 판정 시 :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
- 위법,부당한 해고로 판정 시 : 복직 또는 전직
(소요기간 의무복무기간 산입)



질의응답




감사합니다